

2026년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7.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창출, 고용유지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자립 도모
3. 사업예산: 242백만원 범위 내 ※ 상반기 추진 이후 잔여 예산
4.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23.(목) ~ 8. 6.(목) 18:00
※ 접수장소: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5. 참여대상(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6.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따른 유급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원

1) 지원기준 금액

구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일반기업 (SVI양호이하, 미측정)
지원금액	월 140만원	월 120만원	월 100만원

※ 2026년 1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선정 및 약정 체결 기업 동일 적용

2) 금액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에서 지원하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

※ 참여근로자의 결근, 조퇴, 지각(유급휴가제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근무시간 적용

7.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년 12월(예산소진시 지원 종료)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8. 지원인원: 기업별 1인 이상 10인 미만 원칙

- 취약계층 근로자 우선 지원
- 예산상황 및 기업 심사에 따른 지원 배정인원 조정

9. 참여제한 근로자

- 현재 추진중인 고용노동부(국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과 참여근로자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있는 자
-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사업명에 한정하지 않으며 인건비 포함시 중복 불가)
-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단체에서 퇴직한 자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대학원생 포함)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Ⅱ 참여 제외대상

1.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26. 6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2.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확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 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6.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7.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Ⅲ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6. 7. 23.(목) ~ 8. 6.(목) 18:00

2. 신청방법: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2층) 경제소상공인과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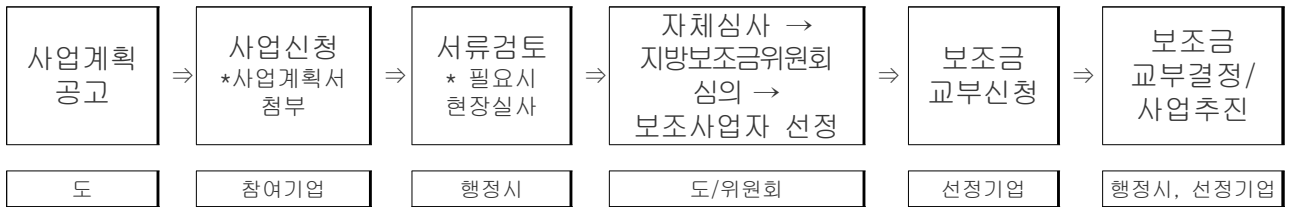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1청사 본관(2층) 경제일자리과

3.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3
4	사회서비스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5	심사항목 중 정성평가 부분 실적보고서(사회적가치지표관련) 및 증빙자료	붙임5
6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유급근로자 명부는 '26. 6월 기준, 임금대장은 최근 1개월분	붙임6
7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 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 제출	
8	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 자료	
9	'24 ~ '25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재무제표 필수 그 외 선택
10	보조금 심의 자료(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IV 심사사항

1. 사업추진 절차



2. 심사기준

- 행정시장은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신청서류 등을 확인·검토하고 검토보고서 송부(필요시 현장 실사 가능)
- 심사방법 및 기준
 - 요건 심사 및 대면심사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
 -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인원(규모) 심사
 - 지원인원 규모는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인증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지속가능성 등
-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30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 지원 인원은 사업 수행
가능성 등 감안 조정

- (가) 사업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 (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라)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원대상 선정

-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가능
-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나)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다)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V 기타사항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으로 심사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제42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5.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를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도 및 관할 행정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	경제정책과	064-710-4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권역 지원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064-726-4843) 내선번호 2(기업성장팀)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팩스)		Tel. (Fax.)	
전자메일주소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의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㉔[], ㉕[], ㉖[]) ☐ 혼합형 ☐ 기타형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_____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 12개월)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SVI 측정 여부 및 결과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취약(), 미측정()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중·장기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신청내용					
신청인원	총 명 (단, 시간선택제인 경우 인원/시간 기입)				
사업내용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시장 귀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붙임 제2호서식]
- ②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3호서식]
- ③ 사회서비스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붙임 제4호서식]
- ④ 심사항목 중 정성평가 부분 실적보고서(사회적가치지표관련) 및 증빙자료[붙임 제5호서식]
- ⑤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6호서식]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 유급근로자 명부는 '26. 6월 기준, 임금대장은 최근 1개월분
- ⑥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 단,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 제출
-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 자료
- ⑧ '24년도 및 '25년도 재무제표
 - ▶ SEIS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 반드시 필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참여 신청 직전월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 / 12개월
근로자 현황의 전체유급근로자수: 재정지원 사업 신청 당시 전체유급근로자수
-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업 보건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7)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동의 여부: 참여근로자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을 원할 경우에 동의 여부 체크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가[], 나[]) ☐ 혼합형 ☐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시·군·구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뒤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분류</th> <th>평균단가</th> <th>산출근거</th> <th>연매출액</th> </tr> </thead> <tbody> <tr> <td>문구류</td> <td>2,000원</td> <td>2,000X5,000개X12개월</td> <td>120,000,000원</td> </tr> <tr> <td>의류</td> <td>30,000원</td> <td>30,000X500개X12개월</td> <td>180,000,000원</td> </tr> <tr> <td>전자제품 액세서리 류</td> <td>50,000원</td> <td>5,000X2,000개X12개월</td> <td>120,000,000원</td> </tr> </tbody> </table>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 예	☐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 예	☐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 예	☐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 ¹⁾		할인 제공형 ²⁾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명)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kg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kg 당 600원)

【별지 서식】 필요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정성평가 사회적가치지표 관련)

1.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①인증사회적기업 ②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일	. . .
주 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25년 매출액				기업규모	☐ 중기업 ☐ 소기업
인증(지정) 번호				인증(지정) 유형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2. 심사항목 * 예시는 지우고, 증빙 가능한 내용만 작성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판단기준	내용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제품 서비스	생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 오염 예방
		판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기업은 3개 항목(제품·서비스, 이용자, 기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으며, 항목별 실적이 있는 기업만 기재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	내용
조직 내부운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복리후생비: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내역 기재 (예)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지급, 통근차량 제공 - 증빙자료: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②근로자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예)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 증빙자료: 2025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③시설투자비: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예)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 (예)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인력·시간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봉사활동, 재능기부 등)한 내역을 기재 (예)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00회,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임직원 봉사활동) 00회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3. 지역사회 협력 및 고정 매출처 확보 등 (20점)

판단기준	내용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및 고정 매출처 확보, 공공구매 연계-확대가능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업무협약(MOU), 협력활동 등 기재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 거래 및 고정 매출처 등 기재

4. 기업 혁신노력도 (10점)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투입과 활동의 혁신의 노력을 자유롭게 기재
 - 모든 항목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판단기준	내용
과정의 혁신	①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 * 기술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자 등 전문인력 자격 사항은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② (R&D 투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 등 ③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④ (기업 내·외부 소통노력) Bottom-up 방식의 사내 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 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기술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창작 부서 등 설치, 신제품 출시 등
혁신의 결과	※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u>정량적</u> 으로 기재 ① (재무 성과)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투자 유치 또는 지원사업 선정 등 과정의 혁신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가 또는 비용 감소 등 ② (고객 만족) 이용자 수 증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재구매율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등 ③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원·등록, ISO 등 국제 인증여부 등 *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3년 이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인정 ④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붙임 6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 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평균 임금 ③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④	고용 형태 ⑤	직종 ⑥	사회적 기업관련 지원 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1	홍○○	01.2.3	남	해당없음	22.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4.4.1	여	결혼이민자	20.3.1	1,500,000		40	무기 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등
-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취약계층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별표 1 취업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업계층으로 인정한 사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강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강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 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 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 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4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사·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 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건물· 산업설비 청소,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방제서비스)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